

2017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심의자료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안)

의안 번호	2017-3
----------	--------

제안자 :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제안일자 : 2017. 9. 29.

I 제안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5.5.13) 및 시행으로 대학회계 도입
 -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과 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우리 대학 여건에 맞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 관련 법규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II 주요내용

-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예산 편성
 - 도 지원금 재원으로 예산 편성 금지
-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영역별 지급비율 →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 4 : 2 : 4
 - 지급액(100%) = 활동계획서(40%)+실적보고서(40%)+활동실적 심사(20%)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비용 전액 환수
 - 비용 지급 후 잔여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 재분배 불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한 대학 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11명(보직 4, 위촉 7) * (외부위원) 타 대학이 추천하는 2인 이내
-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차등 지급 심의 등

☐ 지급계획 및 집행 현황 공개

☐ 지급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인원(명)	합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합 계	45	252,630	92,050	42,000	118,580
총 장	1	8,050 (100%)	8,050(100%)		
전임교원	30	210,000 (100%)	84,000 (40%)	42,000 (20%)	84,000 (40%)
조 교	14	34,580 (100%)			34,580 (100%)

붙임 2017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안)

2017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교직원 실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역량 강화

I. 배경 및 필요성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15.5.13) 및 시행으로 대학회계 도입
 - 대학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과 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14년) 기성회계, 연구보조비 → ('15년) 대학회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 우리 대학 여건에 맞는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속 교직원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 등을 장려
 - 평가와 보상을 통한 교직원 실적 향상으로 대학의 역량 강화

II. 추진근거

□ 관련법령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 (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⑤의 4.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강원도립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2017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교육부)

【 관련법규 및 교육부 지침 주요내용 】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
 - 이전 회계연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 결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
 -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 각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계획서 상의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
 - 매년도 지급계획 수립, 공개(지급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개인별 지급 명세 관리, 부당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 조치 마련
- (교육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가이드라인('17.1월)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 통합·운영
 - 교육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결과 등 제도 개선사항 준수
 - 일부 선급금 또는 분할하여 지급 가능
 -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
 - 종전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예산 총액을 그대로 분할 지급하기 위한 단가 조정 불가

III. 기본방향

-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예산 편성
 - 도 지원금 재원으로 예산 편성 금지
 - '17년 당초예산 기준, 자체수입금(2,119백만원)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253백만원) 비율(11.9%)
-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영역별 지급비율 →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 4 : 2 : 4

- 지급액(100%) = 활동계획서(40%) + 실적보고서(40%) + 활동실적 심사(20%)
 - 학년 초 활동계획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영역별 활동 준비를 위한 비용 지급(선급금, 40%)
 - 학년 말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영역별 활동 비용 지급(40%)
 - 학년 말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0~20%)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비용 전액 환수
- 비용 지급 후 잔여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 재분배 불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한 대학 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11명(보직 4, 위촉 7) * (외부위원) 타 대학이 추천하는 2인 이내
-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차등 지급 심의 등

☐ 지급계획 및 집행 현황 공개

- 법 제24조에 따라 예·결산 시 예산 및 집행현황 공개

☐ 교수업적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대학의 발전방향 모색

- 개인 역량 강화 → 대학 역량 강화

IV.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지급 대상 : 45명
 - 총장 1, 전임교원 30, 조교 14
 - * 2017. 3.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교원은 2018학년도부터 지급
- 지급 제한
 - 8.31.일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교직원
 - 실적 인정기간 동안 연구년 및 장기 해외파견 중인 교직원

(연구년)

· 교육 영역 : 지급 제외

* 단, 능력개발 6개월의 경우 그 외 기간에 계획서 및 실적물을 제출하면 비용 지급

· 연구·학생지도 영역 : 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적을 제출 시 비용 지급

(장기 해외파견)

· 교육/학생지도 영역 : 지급 제외

· 연구 영역 : 계획서와 그에 따른 실적을 제출 시 비용 지급

○ 지급 제외

-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된 교직원

- 휴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등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이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이 학기별 1개월 미만 또는 연구영역이
연간 2개월 미만인 교원

□ 지급영역

○ 총 장 :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대학 전체 실적 평가)

○ 전임교원 :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개인 + 학과 평가)

○ 조 교 : 학생지도 영역(학과 평가) * 행정조교는 학과 평균 점수 부여

□ 지급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인원(명)	합계	교육	연구	학생지도
합 계	45	252,630	92,050	42,000	118,580
총 장	1	8,050 (100%)	8,050(100%)		
전임교원	30	210,000 (100%)	84,000 (40%)	42,000 (20%)	84,000 (40%)
조 교	14	34,580 (100%)			34,580 (100%)

※ 총장 평가 : 대학 차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 평가

□ 지급기준

○ 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인 원 (명)	S등급 (20%)	A등급 (60%)	B등급 (20%)	C등급
총 장	1	1			
전임교원	30	6	18	6	-
조 교	14	3	8	3	-

※ 총장은 절대평가에 의해 85점 이상 S등급, 75점 이상 85점 미만 A등급, 75점 이하 B등급

※ C등급은 활동계획서 또는 실적보고서 미제출 인원

○ 등급별 지급비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비율	115%	100%	85%	미 지급

※ (A등급 지급금액 기준) S등급은 115%, B등급은 85% 지급

○ 1인당 영역별 · 등급별 기준액

(단위: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비고(지급시기)	
총 장	합 계			8,050	7,000	5,950		
	총괄 (100%)	선급	공통(40%)	2,800	2,800	2,800	'17.9월	
		후급	차등(60%)	5,250	4,200	3,150	'18.1월	
전 임 교 원	합 계			8,050	7,000	5,950		
	교육 (40%)	계		3,220	2,800	2,380		
		선급	공통(40%)	1,120	1,120	1,120	'17.9월	
			후급	공통(40%)	1,120	1,120	1,120	'18.1월
				차등(20%)	980	560	140	'18.1월
	연구 (20%)	계		1,610	1,400	1,190		
		선급	공통(40%)	560	560	560	'17.9월	
			후급	공통(40%)	560	560	560	'18.1월
				차등(20%)	490	280	70	'18.1월
	학생 지도 (40%)	계		3,220	2,800	2,380		
		선급	공통(40%)	1,120	1,120	1,120	'17.9월	
			후급	공통(40%)	1,120	1,120	1,120	'18.1월
				차등(20%)	980	560	140	'18.1월
조 교	합 계			2,840.5	2,470	2,099.5		
	학생 지도 (100%)	선급	공통(40%)	988	988	988	'17.9월	
			공통(40%)	988	988	988	'18.1월	
			차등(20%)	864.5	494	123.5	'18.1월	

□ 지급절차

구 분	추진시기	수행주체	비고
① 활동계획서 제출	'17. 10월	교수, 조교	
② 활동계획서 심사	'17. 10월	심사위원회	
③ 선급비용 지급	'17. 10월	교학처/사무국	
④ 영역별 활동 실시	'17. 1월 ~ 12월	교직원	
⑤ 실적보고서 제출	'18. 1월	교직원 → 교학처	
⑥ 실적보고서 심사	'18. 1월	심사위원회	
⑦ 후급비용 지급	'18. 2월	교학처/사무국	

□ 심사위원회 운영(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11명

- 위원장(당연직) : 교학처장
-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 위촉직 위원 : 7명(전임교원 및 조교, 외부위원 2명 포함)

○ 위원 임기

- (당연직) 보직 · 재임기간, (위촉직) 1년 / 연임 가능
- 위원 본인 관련 심사 시 제척, 의결 불가

○ 심사위원회 운영

- (소집) 위원장,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결사항

-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영역별 활동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평가)
- 활동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허위 · 부당한 비용 수령에 따른 환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환수대책

○ (전액환수)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 환수 조치

- 활동계획서 제출 이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실적보고서 상 증빙서류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선급금을 지급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없이 본인의 원 또는 징계에 따른 면직처분(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경우

○ (환수유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 영역에 지급된 비용 전액의 환수 조치를 유예할 수 있음

-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재직 중 사망 또는 당연 퇴직한 경우

○ (환수방안) 환수 명령을 받은 교원이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금액을 완납 시까지 비용 지급 중지
- 다음연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

V. 영역별 평가기준

가 총 장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영역별	총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8,050 (100%)	1명	8,050	7,000	5,950	0
교육/연구/학생지도	8,050 (100%)	1명	8,050	7,000	5,950	0

- * 총장은 절대평가에 의해 85점 이상 S등급, 75점 이상 85점 미만 A등급, 75점 이하 B등급,
- * 등급별 차등 지급비율 : S(115%), A(100%), B(85%)

□ 평가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평가기준

○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소계			40점	
교육	강의평가	◦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 =10점 × $\frac{(1\text{학기}+2\text{학기})}{5\text{점}}$	10점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 비정규 수업 강의 ◦ 재학생 대상 특강 또는 프로그램 주관 (대학 및 센터 주관)	10점	
	강의 개선	◦ 센터 주관 연구발표, 교수법 개선 실적 등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10점	
	외부평가	◦ 대학구조개혁평가 ◦ 기관평가 인증	10점	◦ 정부 재정지원 해제 시 : 5점 ◦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 5점

연구	소계			20점	
	연구실적물의 양	◦ 연구실적의 양 (논문, 작품 발표회 등)	= 10점 - (순위*1점 - 1점) * 순위 : 연간 인정합산을 합계 순	10점	
	연구실적물의 질	◦ 교수업적평가표의 연구실적 질 평가	= 10점 × $\frac{\text{질 평가점수}}{15점}$	10점	
학생지도	소계			40점	
	신입생 등록률	◦ 학과별 신입생 등록실적	◦ 등록률 100% : 16점 ◦ 등록률 90이상%~100%미만 : 8점 ◦ 등록률 80이상%~90%미만 : 3점 ◦ 등록률 80% 미만 : 0점	16점	
	취업률	◦ 학과별 취업실적	◦ 취업률 75% 이상 : 16점 ◦ 취업률 70%이상~75%미만 : 8점 ◦ 취업률 60%이상~70%미만 : 3점 ◦ 취업률 60% 미만 : 0점	16점	
	중도탈락률	◦ 학과별 중도탈락(자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4점 = 4점 ×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4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 - 3회 이상이면 : 4점 = 4점 × $\frac{\text{평균상담건수}}{3회}$	4점	

※ 지표별 평가는 전임교원 평가점수의 평균을 적용한다.

나 전임교원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영역별	총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등급 인원	S등급 6명(20%)	A등급 19명(60%)	B등급 6명(20%)	C등급 -
합 계	210,000 (100%)	30명	8,050	7,000	5,950	0
교육	84,000 (40%)	30명	3,220	2,800	2,380	0
연구	42,000 (20%)		1,610	1,400	1,190	0
학생지도	84,000 (40%)		3,220	2,800	2,380	0

* C등급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지급대상 제외, C등급인원은 B등급인원에 포함
등급별 차등 지급비율 : S(115%), A(100%), B(85%)

□ **평가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평가기준**

○ **교육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강의평가	◦ 교수별 강의평가 점수	$= 10\text{점} \times \frac{(1\text{학기}+2\text{학기})}{5\text{점}}$	10점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 비정규 수업 강의 ◦ 재학생 대상 특강 또는 프로그램 주관(대학 및 센터 주관) ※ 강의수당 지급의 경우는 제외	◦ 1점/회	10점	
강의개선	◦ 센터 주관 연구발표, 교수법 개선 실적 등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 교수법 개선 제안 및 개선 증빙 (총장결재)	◦ 5점/건	10점	
	◦ 센터 등 인정 외부기관연수 ※ 교수법 개선 제안 및 개선 증빙 (총장결재) -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 취창업정보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 총장 인정 기타 외부기관연수	◦ 14시간 이상이면 10점 $= 10\text{점} \times \frac{\text{교육 이수시간}}{14\text{시간}}$	10점	
교육역량 강화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내 보직활동 및 위원회 활동실적 평정 ※ 중복 적용 ※ 위원회 활동 : 2/3 실적 이상 ※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	◦ 산출식 = $20-(\text{순위} \times 0.5 - 0.5)$	20점	

		평가항목(12개월 단위 환산 적용)	배점		
		처·단장	15		
		교수학습센터장 취창업정보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NCS지원센터장	10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체육부장 사회봉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공공인재반 책임교수	8		
		신문사 및 방송사 주간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장	3		
		각종 위원회	1		
		대학 외부평가 활동실적	◦ T/F팀 활동실적 - T/F팀 : 구조개혁평가, 기관인증평가, 대학발전, 특성화, 총장 인정 등		
◦ 대학발전 및 평가 기여도 - 실적 증빙 제출 - 평가기관 보고서 등 ※ 강의개선 보고서와 중복 불가	◦ 평가관련 연수 : 5점/일 ◦ 평가기관 제출용보고서 - 작성 : 15점/건 - 검토 : 5점/건		15점		
◦ 대학구조개혁평가 ◦ 기관평가 인증	◦ 정부 재정지원 해제 시 : 5점 ◦ 인증 충족 및 유지 시 : 5점		10점		

※ 감점(20점) :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참가 유도

평가항목	배점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 및 센터 주관 참여실적 - 교수회, 설명회, 발표회, 워크숍 등	◦ 불참 : -2점/회

○ 연구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연구실적물의 양	- 연구실적의 양 (논문, 작품 발표회 등) ※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	= 30점 - (순위*1점 - 1점) * 순위 : 연간 인정합산을 합계 순	30점															
연구실적물의 질	교수업적평가표의 연구실적 질 평가	= 30점× $\frac{\text{질 평가점수}}{15\text{점}}$	30점															
학술활동	- 학회 활동실적 평정 - 학회활동 증빙 서류 ※ 단순참가 불가(좌장 및 논문발표 등 역할 수행 시)	산출식 = 20-(순위*0.5-0.5)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td> <td>3점</td> </tr> <tr> <td>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td> <td>3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배점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	3점	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	3점	20점									
평가항목	배점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학술대회발표논문심사위원	3점																	
국제학술회의 또는 전국규모 국내학술회의 초청 강연, 좌장, 논문발표, 사회, 토론	3점																	
외부 연구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기술 이전 실적 / 수탁액 - 활동실적이 없을 시 0점 - 지식재산권은 대학이 권리를 갖는 경우에 한함	- 산출식 = 20-(순위*0.5-0.5) - 특허 및 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td> <td>2점</td> </tr> <tr> <td>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td> <td>1점</td> </tr> </tbody> </table> ※ 특허가 기술이전으로 연계된 경우 건당 1점씩 가점 - 수탁액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원 이상</td> <td>3점</td> </tr> <tr> <td>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td> <td>2점</td> </tr> <tr> <td>2천만원 미만</td> <td>1점</td> </tr> </tbody> </table> ※ 산학협력단 간접비 편성 여부	평가항목	배점	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	2점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	1점	평가항목	배점	3천만원 이상	3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점	2천만원 미만	1점	20점	
평가항목	배점																	
국제특허(지적소유권) 등록(개인)	2점																	
국내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개인)	1점																	
평가항목	배점																	
3천만원 이상	3점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점																	
2천만원 미만	1점																	

※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차등급만 지급

○ 학생지도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신입생 등록률	◦ 학과별 신입생 등록실적	◦ 등록률 100% : 35점 ◦ 등록률 90이상%~100%미만 : 15점 ◦ 등록률 80이상%~90%미만 : 5점 ◦ 등록률 80% 미만 : 0점	35점	
취업률	◦ 학과별 취업실적	◦ 취업률 75% 이상 : 35점 ◦ 취업률 70%이상~75%미만 : 15점 ◦ 취업률 60%이상~70%미만 : 5점 ◦ 취업률 60% 미만 : 0점	35점	
중도탈락률	◦ 학과별 중도탈락(자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20점 $= 20점 \times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20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 - 3회 이상이면 : 10점 $= 10점 \times \frac{\text{평균상담건수}}{3회}$	10점	

※ 동점자 발생 시 ①등록률 → ②취업률 → ③중도탈락률 → ④학생상담실적 순에 따라 순위 산정

다 조 교

□ 소요예산

(단위: 천원)

영역별	총 지급금액	1인당 지급금액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	3명(20%)	8명(60%)	3명(20%)	-
합 계	34,580 (100%)	14명	2,840.5	2,470	2,099.5	0
학생지도	34,580 (100%)	14명	2,840.5	2,470	2,099.5	0

* C등급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지급대상 제외, C등급인원은 B등급인원에 포함
등급별 차등 지급비율 : S(115%), A(100%), B(85%).

□ 평가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내용	산출식	배점	비고
합계			100점	
신입생 등록률	◦ 학과별 신입생 등록실적	◦ 등록률 100% : 40점 ◦ 등록률 90이상%~99%미만 : 20점 ◦ 등록률 80이상%~89%미만 : 5점 ◦ 등록률 80% 미만 : 0점	40점	
취업률	◦ 학과별 취업실적	◦ 취업률 75% 이상 : 40점 ◦ 취업률 70%이상~74%미만 : 20점 ◦ 취업률 60%이상~69%미만 : 5점 ◦ 취업률 60% 미만 : 0점	40점	
중도탈락률	◦ 학과별 중도탈락(지퇴, 제적 등) 최소화 노력 평정	◦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 10점 $= 10점 \times \frac{\text{전국 중도탈락률}}{\text{학과 중도탈락률}}$	10점	
학생상담 실적	◦ 교수별 재학생 상담 실적 - 진로, 취업 등 학생상담이력 시스템 등록건수	◦ 배정학생당 평균 상담건수 - 3회 이상이면 : 10점 $= 10점 \times \frac{\text{평균상담건수}}{3회}$	10점	

* 행정조교는 평균 배점을 적용한다.

VI. 추진일정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 '17. 2월
- 지급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 '17. 3월
 - 공문 시행, 전체 교수회, 학과장 회의, 조교협의회 회의 등
- 심사위원회 운영 : '17. 6월
 - 위원 위촉, 지급기준(안) 검토 등
- 지급기준(안) 도와 협의 : '17. 6월~9월
- 지급기준(안) 확정(심사위원회) : '17. 9월
- 재정심의위원회 상정 : '17. 10월
- 지급계획 수립 및 시행(교학처 → 총장, 전임교원, 조교) : '17. 10월
- 활동계획서 제출(지급대상 → 교학처) 및 심사 : '17. 10월
- 선급금 지급(사무국, 교학처) : '17.10월
- 실적보고서 제출(지급대상 → 교학처), 평가(심사위원회) 및 후급 지급 : '18. 1~2월

VII. 행정사항

- 지급기준(안), 활동계획서, 실적 평가 심의 : 심사위원회
- 비용 지급 : 교학처, 사무국
- 예산 및 결산 공개 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공개 : 교학처
 - 지급계획, 예산편성, 집행현황 등

< 2017학년도 활동 계획서 >

◆ 전임교원(교육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서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계획 내용				비고
강의평가	강의평가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계획 작성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비정규 수업 및 특강 실시 계획				
강의개선	교수법 연수 참가 및 제안서 제출				
교육역량	보직 및 위원회 활동실적				
대학 외부평가 활동실적	T/F팀 활동 및 평가 기여도				
합계					

위와 같이 2017학년도 교육영역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2017학년도 활동 계획서 >

◆ 전임교원(연구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서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계획 내용				비고
연구실적 물의 양	연구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				
연구실적 물의 질	연구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				
학술활동	학술활동 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				
외부연구	외부연구 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				
합계					

위와 같이 2017학년도 연구영역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2017학년도 활동 계획서 >

◇ 전임교원(학생지도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계획 내용	비고
신입생 등록률	학과 신입생 충원을 실적 예)) 신입생 충원율(정원외 포함): 100%이상 달성 예정	
취업률	학과 취업률 실적 예)) 취업률 70%이상 달성 예정	
중도 탈락율	중도탈락율 실적 예)) 전국 평균 탈락률 이하 달성 예정	
학생상담 실적	학생상담 실적 예)) 배정학생당 평균 3회 이상 달성 예정	
합계		

위와 같이 2017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2017학년도 실적 보고서 >

◇ 전임교원(교육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서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실적			점수	비고
강의평가	강의평가 점수			10	증빙 1
비정규 수업 강의실적	비정규 수업, 특강 및 프로그램 주관 실적			10	증빙 2
강의개선	센터 주관 연구발표, 교수법 개선 실적 : 건 센터 등 인정 외부기관 연수 : 시간 ※ 교수법 개선 제안 및 개선 증빙 (총장결재)			20	증빙 3
교육역량	보직 및 위원회 활동 실적			20	증빙 4
대학 외부평가 활동실적	T/F팀 활동실적 : 점 대학발전 및 평가 기여도 : 점 대학구조개혁평가 : 점 기관평가 인증 : 점			40	증빙 5
합계				100	

위와 같이 2017학년도 교육영역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2017학년도 실적 보고서 >

◇ 전임교원(연구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서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실적	점수	비고			
연구실적 물의 양	연구실적의 양(논문, 작품 발표회 등)	30	증빙 1			
연구실적 물의 질	연구활동의 질	30	증빙 2			
학술활동	업적명	학회명	기간	증빙번호	20	증빙 3
외부연구	사업명	사업비	선정일	증빙번호	20	증빙 4
합계					100	

위와 같이 2017학년도 연구영역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2017학년도 실적 보고서 >

◇ 전임교원(학생지도영역)

제출자	소 속		연락처	교 내	
	직 위			핸드폰	
	성 명	서명		이메일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영역	교육 영역 활동 실적			점수	비고
신입생 등록률	학과 신입생 총원율 실적			40	증빙 1
취업률	학과 취업률 실적			40	증빙 2
중도 탈락율	학과 중도탈락율 실적			10	증빙 3
학생상담 실적	학생상담 실적			10	증빙 4
합계				100	

위와 같이 2017학년도 학생지도영역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